

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
제2차 본회의 (2014.9.16)

# 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# --- 목 차 ---

의 안 번	건 명	페이지
2014 ~ 61	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
2014 ~ 62	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4
2014 ~ 63	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2014 ~ 64	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	9
2014 ~ 65	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2
2014 ~ 66	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4
2014 ~ 67	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	17
2014 ~ 68	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

<의안번호 제2014 - 61호>

**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8. 2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9. 12

**2. 개정이유**

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3조의2 폐지(2009.7.7.시행)로 시군 위임 사항이었던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이 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 2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 조례상 해당조문을 삭제하여 전국적 통일적 집행을 중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함.
-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규제를 완화함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2조)
  - 조례 위임근거였던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3조의2 폐지(2009.7.7.시행)
- 나.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함(안 별표 2)
  - 현행) 7. 그 밖의 건축물 : 시설면적 300㎡당 1대

⇒ 변경)

시 설 물	설치기준
7. 수련시설, 공장 (아파트형은 제외한다), 발전시설	시설면적 350㎡당 1대(시설면적/350㎡)
8. 창고시설	시설면적 400㎡당 1대(시설면적/400㎡)
9. 학생용 기숙사	시설면적 400㎡당 1대(시설면적/400㎡)
10.그 밖의 건축물	시설면적 300㎡당 1대(시설면적/300㎡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로서
  - 『주차장법 시행령』 제3조의2(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)이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 12조의2에 명시됨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2가(2009. 7. 7)폐지 시행 되어 그에 따른 조례안 12조를 삭제 하고여 현행법을 준수하려는 것이며
  - 아울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상위법의 설치기준에 맞추어 세분화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는 현행법을 준수하고 시설물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4 - 62호>

**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8. 2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9. 12

**2. 개정이유**

- 기업중심의 보조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
- 보조금 수혜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 부담 감소로 투자활동 촉진
- 보조금 수혜기업의 채권확보 규정 신설로 담보수취·관리용이 및 보증서 담보로 인한 업체의 이행의무 강화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기준 완화(안 제12조제3항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, 제15조제 2항, 제19조제2항·제3항)
- 나. 보조금 수혜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(안 제19조제3항)
- 다. 채권확보 명문화 규정 신설(안 제19조의2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안정된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입지보조금 지원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30%에서 → 50%까지 지원, 지원한도도 2억원에서 → 5억원으로, 10년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 것을 → 5년 이상으로 단축하려는 것임(조례안 12조와 19조)
  - 고용 고용보조금에 있어서도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에서 → 10인 이상으로 하며, 그 초과인원에 대한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→ 12개월로 늘려 주고자함(조례안 13조)
  - 그리고 교육훈련 보조금 또한 20명 이상에서 → 10명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로, 초과 인원에 대한 지원기간도 6개월의 범위내에서를 → 12개월의 범위내로 지원의 폭을 넓혀 주려는 것임(조례안 14조)
  - 시설보조금도 30억원 이상 공장신설 또는 증설시 초과금액의 2% 범위 내(지원한도: 2억원 내)에서 지원하는 것을 → 20억원 이상 공장신설 또는 증설시 지원하고자 함(조례안 15조)
  - 국내기업지원에 있어서 투자금액이 30억원이상이고 신규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어야 한다.를 → “투자금액 20억원과 신규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을 10명으로 한다. 등(조례안 제 19조)

-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저당권설정 이  
나 이행보증보험증권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신설 하여 보조금  
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(조례안 제19조 2)
-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개정  
하려는 것임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**

<의안번호 제2014 - 63호>

**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8. 20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8. 12

**2. 개정이유**

-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에 관한 내용 중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,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두는 등 공설시장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사용권 양도금지, 원상회복, 변상금 조항을 삭제함(안 제8조, 제20조, 제21조)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제3항, 제81조, 제83조와 중복
- 나.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함(안 제12조)
  - (현행)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- ⇒ (변경)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포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 잔액을 반환한다.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, 「민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(안 제2조~제4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- 이라 함은 ⇒ 이란, 기타 ⇒ 그 밖에, 의 규정에 의한 ⇒ 에 따른
-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⇒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물품관리법」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제3항, 제81조, 제83조와 중복된 사용권의 양도금지, 원상회복, 변상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
  - 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용료의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정하는 것임.
- 이와 같이 상위법을 준수하고 주민권익 보호와 함께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4 - 64호>

**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 
징수에 관한 조례안**
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8. 20
- 라. 산정 및 의결일자 : 2014. 9. 12

**2. 개정이유**

○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「도시공원법」 제30조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개정 되면서 삭제되었는바, 위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고, 같은 법 제4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전국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을 증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함(안 제2조·별표)
- 나. 점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에 관하여 정함(안 제3조·제4조)
  -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징수 가능

- 점용료 환불기준 :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한 경우,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신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- 다. 「거창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」 폐지(안 부칙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도시공원법」 제30조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전부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어 그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위임된 점용료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,
- 그 내용으로는
  - 점용료 산정기준을 (제2조)
  - 점용료 징수와 반환기준에 대하여 (제3조와 제4조)
  - 「거창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」를 부칙으로 폐지하려는 것임.
- 이는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근거에 의해 조례의 폐지와 함께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####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<의안번호 제2014 - 65호>

**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 
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9. 12

**2. 개정이유**

-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을 한정하여 다른 재질의 제품에 대하여 진입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의 재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(안 제11조)
  - 폴리에틸렌 ⇒ 수거·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
- 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내용 반영함(안 제8조, 제19조)
  - 감량의무이행계획서 ⇒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
  - 과태료관련 삭제함(안 제10조제4항, 제12조제3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, 별표 6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「폐기물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문제점을 삭제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  - 음식물류의 수거 및 운반이 편리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
  - 특히,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의 재질을 수거에 용이한 지질로 자유롭게 정하고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로 부분에 대하여는 삭제를 한 것임.
- 이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**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8. 20.

**2. 개정이유**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주민의견 청취 현실화(안 제7조제2항)
- 나.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변경(안 제15조)
- 다.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 적용 기준 완화(삭제 안 제17조)
- 라. 법령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(안 제21조제1호)
- 마. 토지분할 허가기준 신설(안 제24조의2)
- 바. 이행보증금의 산정 방식 명확화(안 제30조의2)
- 사. 1·2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통합(안 제33조 및 제40조)  
1·2종 수변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통합(안 제35조 및 제40조)
- 아. 생산녹지에서 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, 농수산업 관련 시험·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·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(50→60퍼센

트) (안 제53조제2항)

- 자. 농공단지(60→70퍼센트) 및 산업단지(70→80퍼센트)건폐율 완화  
(안 제54조제4호 및 제5호)
- 차.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(안 제58조제11호 ~ 제13호)
- 카.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신설(안 제59조)
- 타.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(안 제61조의2)
- 파.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 
(안 제31조 및 별표 6부터 10까지 및 별표 13, 별표 19)
- 하. 계획관리지역내 창고시설(일반창고 등) 허용
- 거. 그 밖에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 정비

#### **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
- 그 내용으로는 법조문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토지분활 허가 기준을 신설하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내 창고시설을 허용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임
- 이는 상위법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음.

#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#### **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**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**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8. 20

**2. 개정이유**

-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의무이행 및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 등 관련 사항 및 건축기준 등의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정부 규제완화 대책관련 자치법규 의무이행 및 권고 개선과제 반영
  - 군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 허용범위 확대(안 제26조)
  -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(안 제27조)
  -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·관측활동을 허용하는 공개공지의 활용범위 확대(안 제35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 등 관련 사항 마련
  - 공사중단된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 예치사항 마련(안 제23조)
  - 건축물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·수시 점검 실시 대상 건축물 지정(안 제32조)

다.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건축기준 등 완화사항 마련

-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위한 건축기준 완화(안 제21조)
-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장건축물 조경기준 완화(안 제34조)
-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기준 마련(안 제42조)

라.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

- 건축물 사용승인 등 검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마련(안 제29조 및 제30조)
- 건축물 사용승인 등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현실화 반영(안 제31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 조례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위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

○ 그 내용을 살펴보면

- 도시계획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건축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건축위원들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(제3조~ 제7조)
- 7~9명 정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위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항을(제8조~제13조)
- 건축행위의 적용에 대한 완화와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, 건폐율,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것을(제 14조~제21조)
-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 수수료, 가설 건축물, 설계도서의 작성 등을 (제22조~제31조)

-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과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(제32조 ~ )
  - 보칙을 정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.(제42조 ~ )
- 이와 같이 상위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과제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군민들의 건축행위와 그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많아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음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**

- 별표1 건축허가수수료 기준 중 건축허가 등 수수료 200제곱미터만 그 밖의 건축물 6,000원을 7,000원으로 수정

**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**

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 
[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*심 사 보 고 서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

**1. 검토경과**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8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8. 2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9. 12

**2. 개정이유**

- 안전행정부가 경제5단체, 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협업하여 발굴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방법을 개선하고,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가. 현실과 맞지 않는 특수가압시설, 흡수정 관련 조항 삭제(안 제2조제3호·제4호, 제6조제2항, 제15조, 제42조제1항제5호)
- 나. 급수설비 폐전 사유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사항 삭제함(안 제25조제3항제1호·제2호)
  - 상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
  -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
- 다.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및 부담금 납부기한·방법 개선 신설함(안 제46조, 제46조의2, 제46조의3, 제46조의4)

-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.
-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.

#### **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**

-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상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
- 상수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납부 방법을 개선함은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음.

#### 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#### **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### **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**

#### 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**